

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

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4월 14일

경기도인사위원회위원장

1 시험일시

- 2017. 4. 22.(토) 10:00 ~ 11:00 (60분) ※ 09:20까지 입실
※ 9급(식품위생 · 의료기술 · 환경 · 운전) : 10:00 ~ 10:40 (40분)

2 시험장소

- 공고문 6 ~ 8쪽 참고

3 응시자 유의사항

[일반사항]

- 모든 응시자는 시험당일 **09:20까지**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. (시험당일 오전 8시 이전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)
- 모든 응시자는 시험당일 **응시표, 신분증,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, 수정테이프**를 지참하여야 합니다.
 - 응시표 :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(<http://local.gosi.go.kr>) → 마이페이지 → 응시표 출력
 -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
※ 공무원증, 학생증, 자격수첩,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
 - 답안을 잘못 표기한 경우 **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 가능**(수정액·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) 다만,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야 하며, 별도로 제공하지 않음
※ 시험시간 중 타인의 수정테이프를 빌리는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됨
-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소, 교통편,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(단, 시험 전일까지 시험실에는 들어갈 수 없음)

-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, 시험장 사정 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주차공간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지정된 지역의 해당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, 타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
- **‘취업지원대상자(또는 의사상자 등) 가산점’ 및 ‘자격증 가산점’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,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5일 이내에[2017. 4. 22.(토) ~ 4. 26.(수) 09:00 ~ 21:00] 「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」에 접속하여 가산점 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.**
- **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. (09:50 시험장 출입문 일괄 폐쇄)**
-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시험 전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음료(카페인·탄산음료 등)를 마시는 것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배탈·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,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함
- 타 응시자에게 방해되는 행위(시험시간 중 다리를 떠는 행동, 불펜 똑딱 소리, 반복적 헛기침 등)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시험장(시설 전체)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,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.
- 시험시간 중에는 휴대전화, 태블릿PC, 녹화기능이 탑재된 기기(안경 등), 스마트 시계, 무선호출기, MP3, 이어폰 등 일체의 통신기기와 전자계산기, 전자사전 등의 전자기기를 휴대할 수 없으며, 시험시간 중 휴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당해시험을 무효처리하고 퇴실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시험감독관의 시험 종료 예고시간 안내 또는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시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※ 계산·통신 등이 가능한 시계(스마트 시계 등), 소리로 인해 타 응시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시계는 사용 불가
- 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, 배부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**이번 시험의 문제는 비공개 대상이므로 문제책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.**(시험 종료 후 문제책 회수)
※ 출제된 비공개 문제책의 내용을 응시표 등에 옮겨 적거나 녹화기기(안경 등)로 촬영하거나 문제책을 훼손해서는 안됩니다.

[답안지 기재 및 표기]

- 점수산출은 판독기가 판독한 결과에 따릅니다.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“컴퓨터용 흑색 사인펜”을 사용하여 반드시 <보기>의 올바른 표기방식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.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(특점 불인정 등)은 응시자 본인 책임입니다. 특히,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점만 찍어 표기한 경우, 번짐 등으로 두 개 이상의 답란에 표기한 경우, 농도가 얇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답안을 흐리게 표기한 경우 등은 불이익(특점 불인정 등)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<보기> 올바른 표기 : ● 잘못된 표기 : ○, ⊙, ⊖, ⊗, ⊘, ⊚

- 적색볼펜, 연필, 샤프펜 등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표기를 하여 중복답안으로 판독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응시자는 시험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문제책 앞면에 인쇄된 책형을 확인한 후 답안지 책형란에 해당 책형을 반드시 기재(표기)하여야 합니다.
 - ※ 책형 및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(당해시험 무효 처리 등)을 받을 수 있음
-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책 편철이 표지의 과목순서와 일치하는지 여부, 문제책 누락, 인쇄 상태 및 파손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답안은 반드시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, 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“●”로 표기해야 하며, **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야 하며,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. 시험시간 중 타인의 수정테이프를 빌리는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되므로 수정테이프가 없는 경우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**
 - ※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,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눌러주어야 함(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)
 - ※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과 불원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
- 답안지는 훼손·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,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 마크(■■■■■)를 절대 훼손해서는 안됩니다.

[부정행위 등 금지]

- 다음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(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제1항)

-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-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-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
-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- 병역, 가점,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-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-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- 다음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.(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제2항)

-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
-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
-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
-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
 -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
 -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
 -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
 -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
 - 시험 종료 후에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는 행위
 - 본인에게 지정된 시험장이 아닌 타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행위
 - 기타 시험감독관의 지시 등에 따르지 않아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- ▶ 특히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경우 당해시험을 무효처리할 예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책형 및 인적사항을 포함한 모든 기재사항은 시험시간 내에 해당시험실에서 작성을 완료하여야 함

- ▶ 시험 중에 소지하고 있는 응시표의 앞면 또는 뒷면에 시험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인쇄되었거나 메모되어 있는 경우 당해시험이 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,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4 필기시험 가산점 등록 안내

-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으므로, **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5일 이내에[2017. 4. 22.(토) ~ 4. 26.(수) 09:00 ~ 21:00]** 「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」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산점 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.
- ※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(<http://local.gosi.go.kr>) → 마이페이지 → 가산자격증 등록
- ※ **취업지원대상자**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등 (보훈상담센터 ☎1577-0606)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, 필기시험 시행 전일 (2017. 4. 21.)까지 유효하게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점을 받을 수 없음
- ※ **의사상자 등**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(☎044-202-3258)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, 필기시험 시행 전일(2017. 4. 21.)까지 유효하게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점을 받을 수 없음
- ※ [별첨] 필기시험 가산점 적용 및 등록안내 참조

5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

-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2017. 5. 15.(월) 전·후에 경기도 홈페이지 시험정보 (<http://www.gg.go.kr/sihum>)에 게시합니다.

붙임

시험장소

○ 지역별로 학교명이 유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시험장소, 교통편, 이동 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직별·직급	임용예정 기관	응시번호	수용 인원	시 험 장	
				학교명	주 소
농업연구사(작물)	경기도	21000001 ~ 21000297	297	수원정보과학고 (408명)	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551번길 16 (원천동) http://swjb.hs.kr
농업연구사(축산)	경기도	22000001 ~ 22000020	20		
수의7급(수의)	경기도	27000001 ~ 27000059	59		
	안산시	27060001 ~ 27060004	4		
	양주시	27200001 ~ 27200001	1		
	안성시	27210001 ~ 27210001	1		
	의왕시	27240001 ~ 27240018	18		
	가평군	27300001 ~ 27300001	1		
수의연구사(수의)	김포시	23140001 ~ 23140007	7		
보건연구사(공중보건)	경기도	24000001 ~ 24000237	237	원천중학교 (469명)	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551번길 38 (원천동) http://woncheon.ms.kr
환경연구사(환경)	경기도	25000001 ~ 25000232	232		
농촌지도사(농업)	경기도	26000001 ~ 26000078	78	동성중학교 (604명)	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293 (우만동) http://www.dongsung-one.ms.kr
	고양시	26020001 ~ 26020032	32		
	용인시	26040001 ~ 26040081	81		
	남양주시	26070001 ~ 26070151	151		
	평택시	26100001 ~ 26100031	31		
	김포시	26140001 ~ 26140063	63		
	안성시	26210001 ~ 26210061	61		
	포천시	26230001 ~ 26230016	16		
	여주시	26260001 ~ 26260036	36		
	양평군	26270001 ~ 26270029	29		
	연천군	26310001 ~ 26310026	26		

직별·직급	임용예정 기 관	용시번호	수용 인원	시 험 장	
				학교명	주 소
식품위생9급 (식품위생)	용인시	31040001 ~ 31040189	189	수원중학교 (702명)	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666-10 (매교동) http://suwon.ms.kr
	의정부시	31110001 ~ 31110195	195		
	파주시	31130001 ~ 31130135	135		
	이천시	31190001 ~ 31190100	100		
	하남시	31250001 ~ 31250083	83		
의료기술9급 (임상병리)	고양시	32020001 ~ 32020102	102	영신중학교 (568명)	수원시 권선구 삼천병마로 1566번길 30 (오목천동) http://youngshin.ms.kr
	화성시	32090001 ~ 32090037	37		
	파주시	32130001 ~ 32130013	13		
	김포시	32140001 ~ 32140037	37		
	광주시	32160001 ~ 32160032	32		
	오산시	32180001 ~ 32180037	37		
	안성시	32210001 ~ 32210019	19		
	포천시	32230001 ~ 32230026	26		
	하남시	32250001 ~ 32250034	34		
의료기술9급 (임상병리) (시간선택제)	안성시	33210001 ~ 33210021	21		
의료기술9급 (방사선)	남양주시	34070001 ~ 34070063	63		
	파주시	34130001 ~ 34130029	29		
	김포시	34140001 ~ 34140072	72		
	광주시	34160001 ~ 34160046	46		

직별·직급	임용예정 기 관	용시번호	수용 인원	시 험 장	
				학교명	주 소
의료기술9급 (방사선)	광주시	34160047 ~ 34160070	24	동수원중학교 (676명)	수원시 영통구 동탄원천로 1109번길 92 (매탄동) http://dongsuwon.ms.kr
	이천시	34190001 ~ 34190049	49		
	포천시	34230001 ~ 34230026	26		
	양평군	34270001 ~ 34270030	30		
의료기술9급 (물리치료)	화성시	35090001 ~ 35090068	68		
	광주시	35160001 ~ 35160061	61		
	연천군	35310001 ~ 35310041	41		
의료기술9급 (치과위생)	화성시	36090001 ~ 36090189	189		
의료기술9급 (치과위생) (시간선택제)	고양시	37020001 ~ 37020038	38		
환경9급(수질)	포천시	38230001 ~ 38230150	150		
환경9급(수질)	포천시	38230151 ~ 38230209	59	율전중학교 (620명)	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 381번길 59 (율전동) http://www.yuljeon.ms.kr
환경9급(대기)	김포시	39140001 ~ 39140161	161		
	포천시	39230001 ~ 39230043	43		
환경9급(폐기물)	포천시	40230001 ~ 40230091	91		
운전9급(운전)	남양주시	41070001 ~ 41070094	94		
	평택시	41100001 ~ 41100040	40		
	이천시	41190001 ~ 41190010	10		
	안성시	41210001 ~ 41210012	12		
	하남시	41250001 ~ 41250080	80		
	동두천시	41280001 ~ 41280017	17		
운전9급(운전) (시간선택제)	경기도	42000001 ~ 42000013	13		